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0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오기형·정태호·최기상

안도걸 • 박홍근 • 임광현

황명선 · 김영환 · 신영대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인척 증여 대신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을 "4촌"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을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 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	
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	
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	
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 3의2. 「법인세법」 제52조제1</u>
	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
	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
	여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3호까</u>	4 <u>제3호까</u>

<u>지</u>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그 증여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그 증여세과 사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제53조의2에 따라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조 ~ ⑦ (생 략)

<u>지 및 제3호의2</u>	
 ② · ③ (현행과 같음)	
에53조(증여재산 공제)	
1. ~ 3. (현행과 같음)	
4	
<u> 4촌3촌 이내</u>	
의 인척	
200/ 1	
세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